

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(3차년) 추가모집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 및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술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‘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’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8일
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I 지원개요

1 지원목적

- 지역 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메뉴판식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빠른 시장진입과 기술사업화 기반 확보로 기업성장 촉진

2 지원대상

-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」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상북도 에너지특화기업

3 모집기간

- 공고일로부터 ~ 2026. 06. 19.(금) 18:00까지 ※ 사업비 소진 시까지(추가 공고 가능)

4 지원기간

- 협약 후 ~ 2026. 11. 30.까지

5 총 지원규모

- 금40,000,000원(금사천만원)

II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3,100만원 한도

○ 지원내용

구분	메뉴판식 지원내용		최대 지원금액	선정 기업수
사업화지원	시제품 제작	- 시제품제작비(외주 가공비), 재료비, 견본품, 장비및 기자재 임차비 등 유망 제품의 품화	최대 2,800만원	최대 1개사
고부가 가치화 지원	지식재산권 획득	-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선행조사, 회피기술 설계, 국내외 특허출원·등록비 - 실용신안, 상표권, 디자인, 의장권 등 등록비	최대 300만원	최대 4개사

○ 지원방침

-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
- 최근 3년 내 동일/유사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중복 지원 불가
-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
(단위:원)

구분	총사업비(A)	지원금(B)	기업부담금(C)	부가가치세(D=A*10%)
금액	11,112,000	10,000,000	1,112,000	1,111,200
	지원금+기업부담금	포항TP지원금	기업부담금	

※ 기업부담금은 천 단위에서 올림하여 산정

※ 지원신청서의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재

○ 지원방식

- 직접지원 (포항TP → 지원기업 직접 지급)
- 협약 체결 →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→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

Ⅲ 신청 및 접수

① 신청기간

- 공고일로부터 ~ 2026. 06. 19.(금) 18:00 까지

② 신청방법

- (재)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s://www.ptp.or.kr/>)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신청 등록 ※사업신청등록시한과파일양식(hwp)으로 업로드 필수
-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·반환 불가
-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3]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* 및 기타 증빙자료

구분	제출 서류	제출방법	비 고
신청서	① 지원 신청서 1부	온라인 제출	붙임양식 참조 (必)
	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약약서 각 1부		
기타 증빙 자료	③ 사업자등록증 1부		원본대조필(必)
	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		원본대조필(必)
	⑤ 2024~2025년 재무제표		원본대조필(必)
	⑥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	원본제출(必)
	⑦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		해당 시 제출
	⑧ 수출 실적 증빙서류 (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, 수출신고필증 등)		해당 시 제출
	⑨ 회사 소개서(카탈로그)		해당 시 제출
	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	해당 시 제출
	⑪ 공장등록증		해당 시 제출

※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4] 문의처

담당자	연락처	E-mail
권민재 대리	054-223-2266	kmj@ptp.or.kr

IV 선정절차 및 기준

1] 선정평가

-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,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전략, 결과 활용계획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
- 서류평가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사업수행 진위여부 검토

단계	내용	일자(예정)	평가자
1단계	서류평가 (제출서류 적정성 검토)	~06.22.	포항TP 담당자
2단계	서면평가	6월 중순	외부전문가 5인

※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,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

-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
- 평가위원 구성: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

② 선정기준

- 점수산정: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
-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※ 동일평점 발생 시 재심사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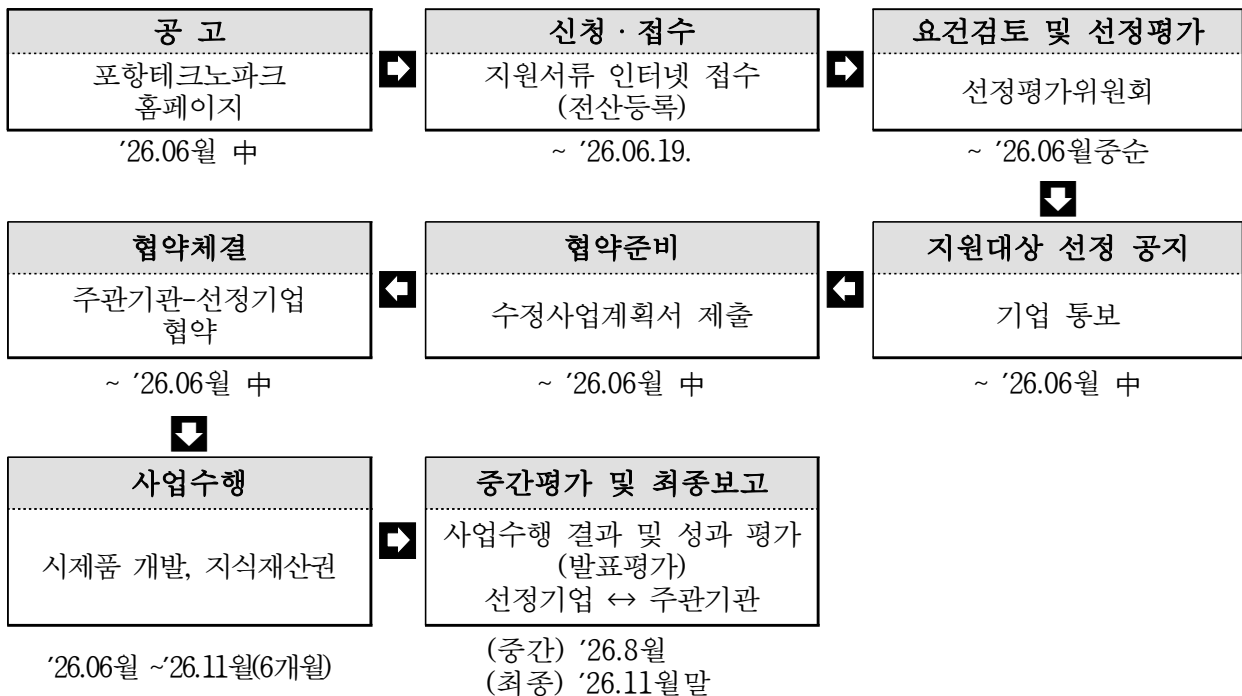
③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목표달성도 (40)	최종목표 달성 정도	25
	추진과정의 적정성	15
운영성과 (30)	경제적 성과(매출, 고용 등)	20
	기술적 성과(특허, 인증 등)	10
성과활용 및 발전성 (30)	사업화 가능성	20
	추가 기술개발 가능성	10
합 계		100

④ 최종선정

-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
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
⑤ 추진일정(안)



※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,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
V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1 신청제한

- 사업내용이 지원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 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-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개인회생·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%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
- ※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
- 외감 기업의 경우,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
〈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〉

▶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(유사한 경우 포함)
 -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2 지원제외

-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-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‘기업’의 경우,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(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인정)
-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작성지침」, 「산업통장사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,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(재)포항테크노파크 규정」

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VI 선정기업의 의무

-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※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VII 유의사항

1 신청 시 유의사항

◆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④ 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”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됩니다.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※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(확인 필수)

③ 선정 후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’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